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8. 2. 9 화순군수
- 나. 회 부 일 자 : '98. 2. 16
- 다. 상 정 일 자 : '98. 2. 16 (제6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 안 자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 나. 개정사유
 - 지방재정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군 금고에 예치·관리코자 함.
- 다. 주요내용
 - 제5조 제1항중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를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로 개정
 - 시행일 이전에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는 기금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만료될때까지 계속 예치할 수 있도록 부칙 제2항 경과조치 규정신설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허길중)

- 본 조례 개정은 관계 법령에 맞도록 규정하기 위한 개정 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5. 토론요지

" 생 략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첨 부 :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금융기관에 적립하거나 국채 또는 정부 보증 은행채 매입에 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를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이전에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는 기금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만료될때까지 계속 예치할 수 있다.

신.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조 (기금의 관리)</p> <p>①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금융기관에 적립하거나 국채 또는 정부 보증 은행채 매입에 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p>	<p>제5조 (기금의 관리)</p> <p>① 기금은 <u>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u></p>